

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2011년 12월 26일 제정 2014년 01월 17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 개정 2024년 02월 02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4. 2. 1.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,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추천이 없는 경우 총장이 위촉한다.

- 교직원 2인 : 기획처장, 직원 1인
- 학생 3인 : 원우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- 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재정 관련 전문가 1인
- 총동문회가 추천하는 동문 1인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내용을 녹음, 녹취,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, 서기는 총무처 직원이 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 정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